

## 地方稅法 改正을 위한 建議文

永登浦區議會 33人の議員은 第2代 地方自治制의 出帆을 앞두고 自治區民의 福利增進과 自治團體의 自立基盤을 공고히 하기 위한 根本課題와 自治區財政의 擴充이라고 判斷하여, 現行 地方稅法 第5條의 特別市稅 및 直轄市稅目中 住民稅와 담배消費稅를 同法 第6條의 2의 區稅目으로 改正해 줄 것을 建議한다.

1994. 10.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0. 17.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0월 6일 배기한 의원외 6인발의
  - 나. 회부일자 : 1994년 10월 17일 운영위원회 회부
  - 다. 상정일자 : 1994년 10월 17일
- 제28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배기한 의원)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의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함(안 제3조)
-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제3항)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안 제8조 제5

항)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9조 제1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지방자치법(94. 3. 16)과 동법시행령(94. 7. 6)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났으며, 내용의 불합리로 인하여 삭제된 조항과 신설된 조항 및 실제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한 개정안이라 보아집니다.

첫째, 제2조(감사)에 다만의 단서는 종전 상임위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하던 것을 본회의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제2조 제4항의 신설은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상위에서나 특별위원회에서와 같이 감사 및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즉시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셋째, 제3조(조사)에 있어서 3항 후단의 내용은 폐회 또는 휴회중에 의원발의 조사요구로써 본회의 소집요구를 갈음하는 것으로 중복회의요구를 피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넷째, 제5조 제1항 3호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법 제138조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립)에 대한 대상이 감사 및 조사에서 삭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4분의 1이상 출자로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만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8조 제1항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출석·증언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출석·증언에 응하지 못할 때 이유를 1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정하고 증인이 증언할 때 선서케 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게 하고, 출석이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섯째,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언이나 진술의 내용을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또 증인에게 실비보상하는 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258 |
|----------|-----|

발의년월일 : '94. 10. 6  
발의자 : 배기한 의원외 6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94. 3. 16) 및 동법시행령 ('94. 7. 6)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사요구서의 제출시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함(안 제3조)
- 나.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제3항)
- 다.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8조 제4항)
- 라.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안 제8조 제5항)
- 마.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9조 제1항)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동조제2항중 "실시하되" 다음에 "본회의"를 삽입하고, 동조제3항중 "통지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시행할" 다음에 "본회의 또는"을 삽입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제5항중 "통지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등포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영등포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대거 제12조를 제10조 대거 제13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로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0조(총전의 제9조) 중 “조사”는 다음에 “본회의”를 삽입한다.

제12조(총전의 제11조) 중 “영 제17조의 6”을 “영 제17조의 7의”로 하고, “영 제17조의 7”을 “영 제17조의 8의”로 한다.

제13조(총전의 제12조) 제2항 중 “의회에서”를 “의회의 규칙으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br/> <u>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u><br/>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br/>         ③ (생 략)<br/>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통지한다.</p> <p>제3조(조사) ① (생략)<br/>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br/>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p> <p>④ (생 략)<br/>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승인시 의회 의장은 조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한다.</p> <p>제4조(사무보조) (생 략)</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 (생 략)</li> <li>3. <u>영등포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u></li> <li>4. (생 략)</li> </ol> | <p>제2조(감사) ①.....<br/> <u>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u><br/>         ② .....<br/> <u>실시하되, 본회의,</u> .....<br/>         .....<br/>         ③ (현행과 같음)<br/>         ④ .....<br/>         .....<br/>         .....<br/> <u>.....통보하여야 한다.</u></p> <p>제3조(조사) ① (현행과 같음)<br/>         ② .....<br/> <u>.....시행 할 본회의 또는</u><br/>         .....<br/>         ③ .....<br/>         .....<br/>         .....<br/> <u>.....이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u><br/>         ④ (현행과 같음)<br/>         ⑤ .....<br/>         .....<br/>         .....<br/> <u>.....통보하여야 한다.</u></p> <p>제4조(사무보조) (현행과 같음)</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br/>         .....<br/>         1. ~2. (현행과 같음)<br/> <u>3. 영등포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u><br/>         4. (현행과 같음)</p>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5.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영등포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br>(생 략)  |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br>(현행과 같음)  |
|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생 략)  |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현행과 같음)  |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재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 ② (생 략)<br>〈신 설〉  | ② (현행과 같음)<br>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br>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br>⑥ 증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u>제9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u>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p> <p>③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영통포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p> |
|   | <p><u>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1.</u>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p>   |
| <p><u>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u><br/>(생략)</p>   | <p><u>제11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u><br/>(현행과 같음)</p>   |
| <p><u>제11조(징계) 1.</u>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17조의 6 규정에 의한 재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17조의 7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p> | <p><u>제12조(징계) 1.</u> (현행과 같음)</p> <p>① 영 제17조의 7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p> <p>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p>   |
|   | <p><u>제13조(준용규정 등) ①</u> (현행과 같음)</p> <p>② 의회의 규칙으로</p>   |